

## 보도자료

2011년 8월 8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(☎750-2770)  
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지원 사무관(☎750-2775) aquarius@kcc.go.kr

#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체계, 전면 강화된다.

## - 방통위 “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” 수립 -
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는 '11. 7월 SK컴즈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의 발생에 대응하여 향후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「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금번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해킹 유출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, 인터넷 기업 등이 주민번호,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반면,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날로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.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는 △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, △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, △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.

첫째로,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, △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·이용 제한, △업종·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, △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, △개인정보의 제공·과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두번째로,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취약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, △관리자 PC의 외부망 분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, △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대, △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도화, △악성코드 탐지 강화, △주요 웹사이트 일제점검, △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.

마지막으로,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이를 위해, △패스워드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, △개인정보 활용 내역의 통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, △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동의 철회 모니터링 및 △스팸,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2차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방통위는 금번 종합대책에 따라 법제도 개선·사업자 점검 강화·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, 이용자가 개인정보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.

붙임 : 「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」 1부. 끝.

【붙임】

---

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 
**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**

---

2011. 8.

< 목 차 >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현황 및 문제점 .....	2
III. 추진 대책 .....	3
1.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.....	3
2.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.....	4
3.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 .....	6

## I 추진 배경

- 최근,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
  - SK컴즈 해킹으로 개인정보 3,500만건 유출 ('11.7)
  -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개인정보 175만건 유출 ('11.4)
-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, 스팸, 전화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
  -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
-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·추진

## II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해킹·바이러스 등 인터넷상 침해 위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규모가 더욱 대형화



□ (문제점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) 다수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·보관 중

- 주민번호·휴대전화번호·주소 등 중요 개인정보도 이에 포함
- 이로 인해,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화사기·메신저 피싱·스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

※ 주요 웹사이트 회원 수('10.9월 기준) : A포털 3284만명, B게임 2375만명, C쇼핑몰 2192만명

□ (문제점② 기업의 보호조치 미흡) 해킹 등에 대비한 기업의 내부 보안 대책 마련, 보안투자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

- 국내기업 중 63.5%가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하고 ('10년 정보보호실태조사), 개인정보 처리자의 통제·관리도 미흡
- 특히, 포털·쇼핑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, 더욱 안전한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,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보호요건만을 준수

□ (문제점③ 이용자 권리행사 부족) 신규 악성코드 등 해킹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

※ SK컴즈 해킹 사건의 경우, 관리자 PC에 설치된 신규 악성코드가 보안업체의 최신 백신에도 탐지되지 않아 고객정보가 유출

- 따라서, 불필요한 계정 탈퇴, 패스워드 변경 등 이용자의 관리 노력이 중요하나,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현실적 제약이 존재

◆ 이용자 제약 사항

- ①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 및 활용 내역을 정확히 알기 곤란
- ② 개인정보의 열람·정정·동의철회 등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음

### Ⅲ 추진 대책

- ◇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
- ◇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상향하고 취약점 점검 확대
- ◇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고 대국민 캠페인 강화

#### 1.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추진

##### □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·이용 제한 추진

- 현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누구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나,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허용 정책으로 전환
- 주민번호의 수집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,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

##### □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및 규제 강화

- 기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수집·이용하도록 업종·서비스 별로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를 마련하고 점검 추진

※ 관련 근거 :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1호(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)

## □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추진

- 휴면 계정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

## □ 개인정보 제공·파기 관련 법규준수 점검 강화

-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처분 강화

※ 관련 규정(법 제24조의2제3항, '11.7.6 시행) 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

- 탈퇴자 등 기업이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처분도 강화

## 2.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

### □ 기업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 강화

- 개인정보 DB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PC 등을 외부망과 분리하고, 암호화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 대상 확대

※ 현재 패스워드·주민번호·계좌번호 등 5가지에 대해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 등 확대 추진('개인정보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' 고시)

### □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대

-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합성을 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PIMS) 인증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신뢰 제고

※ 금년 상반기 6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했으며 하반기 20여개 기업에 인증심사 예정

## □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역량 제고

-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**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** 지정을 제도화하고 IT 외주업체를 위한 보안 가이드 개발·보급
- 보안시스템 구축이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**보안S/W 무료보급을 확대**
  - ※ '11년 악성코드 탐지도구 및 웹방화벽 5000개 이상 보급 추진

## □ 주요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

- 국내 전체 웹사이트(180만개)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점검·탐지하고 악성코드 발견 시 신속하게 통지 및 삭제
  - 악성코드 주요포지인 **웹하드·P2P** 사이트는 세밀하게 점검·단속
- 중국發 해킹 발생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**중국 정부기관 및 인터넷 유관단체와 공조 강화**
  - 中·美·日 등 해외 주요 지점에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구축도 검토

## □ 주요 웹사이트 등에 대해 일제 점검 추진

- 통신·인터넷 등 주요 웹사이트에 대하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**안전성 여부를 사전 점검·확인**하여 취약점을 개선
  - 공공·금융·의료 등 타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합동점검 검토

## □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

- 침해사고 발생시,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,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침해 내용, 대응 조치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방통위 내에 **“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팀”** 신설을 추진

### 3.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

#### □ 패스워드 변경, 휴면계정 정리 등 대국민 캠페인 추진

-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사후피해 방지를 위해 방통위, 교과부, 복지부 등 범부처 공동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 실시
  - 아울러, 이용자에게 휴면계정 통지 및 계정 탈퇴 유도도 병행

#### □ 개인정보 활용 내역의 이용자 통지제도 도입 추진

-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활용 내역을 정확히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

#### □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동의철회 수단 확대

- 개인정보의 열람·정정·동의철회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, 사업자 별로 상이한 동의철회 절차를 쉽게 표준화

※ 관련 근거 :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5호 (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)

-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 대한 동의 철회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검토

#### □ 개인정보 2차 피해 예방활동 강화(피싱, 스팸, 명의도용 등)

- 발신번호·본문내용 등을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하는 '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'를 모든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

※ 현재 만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

- 대형 인터넷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, 국민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알려주는 '정보보호 알리미 서비스' 가입 확대

※ '정보보호 알리미 서비스'는 이통사의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

**붙임**

**주요 실천계획 (Action Plan)**

실천 과제	조치사항	일정
▪주민번호 수집 제한 로드맵 마련	- 로드맵 마련	'11. 12월
▪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 마련	- 가이드 마련	'12. 연중
▪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추진	- 가이드 마련	'11. 10월
▪개인정보 제공·과기 범규준수 점검	- 웹사이트 점검	'11. 8월 ~
▪기술적 보호조치 의무기준 강화	- 정통방법 하위 고시 개정	'11. 12월
▪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확대	- 인증심사 실시	'11년 ~
▪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 지정 제도화	- 정보통신망법 개정	'11. 11월
▪IT 외주업체를 위한 보안 가이드 개발·보급	- 가이드 마련	'11. 10월
▪중소기업 보안S/W 무료 보급	- S/W 개선 및 보급	매년
▪국내 웹사이트 악성코드 은닉 점검	- 신규 악성코드 분석	매년
▪웹하드·P2P 사이트 등 사전 위협 탐지체계 마련	- 위협탐지체계 구축	'12. 상반기
▪중국과 공조 체계 마련	- 중국 기관 협의	'11. 하반기
▪주요 웹사이트 일제 점검 추진	- 현장점검	'11. 하반기
▪비밀번호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	- 캠페인 실시	'11. 10월
▪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	- 신속대응팀 신설	'11. 하반기
▪이용자 통지제도 도입 추진	- 정보통신망법 개정	'12. 10월
▪열람·정정·동의철회 수단 제공 점검	- 웹모니터링	'11. 9월 ~
▪동의철회 등 표준 마련	- 가이드 마련	'11. 10월
▪'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' 전면 확대	- 시스템 확장(이통사)	'12. 3월
▪정보보호 알리미 서비스 확대	- 보급 확대	'11년 ~